

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

1. 심의 신청 대상

- 신청 대상자: 교원, 대학원생, 연구원 등 본교 소속 연구자
- 연구 종류: “인간대상연구”, “인체유래물연구”, “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” 등을 통한 학술연구 및 학위논문연구

2. 생명윤리위원회 회원 가입

- 포털(mySNU) 로그인 ⇒ 연구지원(또는 연구행정) ⇒ 생명윤리(IRB) 홈페이지 접속해 회원 가입
-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심의 신청 가능 (* 생명윤리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함)

3. 생명윤리교육 이수

- 연구책임자 및 모든 연구담당자는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심의가 진행됨
- 생명윤리교육: ① 연구처 주관 찾아가는 연구자 교육, ② CITI(SBR/BMR), ③ 공용IRB 온라인교육
④ 질병관리청 온라인 교육 등
-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의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유효 여부 확인 후 심의의뢰서 제출

4. 심의의뢰서 제출

-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전에 IRB 심의를 받아야 함 (* 「생명윤리법」 제15조 제1항)
- 심의의뢰서는 포털(mySNU)의 생명윤리(IRB)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제출 가능
- 심의의뢰서는 수시 제출 및 수시 접수 가능하나 연구과제가 정규 건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IRB 정기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승인됨
- IRB 정기회의: 매월 둘째 주, 넷째 주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
*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일정 변경 가능, 단 이 경우 사전공지 함
- 연구과제가 정규 건으로 분류될 경우 등에 대비해 최소 연구개시 2달 전(학위논문의 경우 최소 3달 전)에 심의의뢰서를 제출하도록 함

학위논문 심의 신청 시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해 <u>최소 연구개시 3달 전</u>에 심의 신청 *2024년 2월 졸업 예정자: 2023년 10월 중순 前 심의 신청② 사정상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<u>논문심사일정에 임박해 신청 금지</u>③ 심의면제는 자료수집 이전에 신청한 후 승인 이후에 분석할 것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5. 기타 유의사항

- 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서약서 필수 제출
- 연구종료(자료수집 종료) 이후 “종료보고서”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본인(및 지도교수)의 신규심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- 연구책임자가 퇴직/졸업 예정자인 경우 “종료보고서”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
6. 연락처(이메일: irb@snu.ac.kr)

- 신규심의 및 재심의(수정후신속심의): 02-880-8468~8469 (신규심의 및 재심의(수정후신속심의) 관련 단과대별 연락처는 IR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람)
- 심의면제/지속심의/재심의(시정승인): 02-880-2036, 변경심의/종료보고 등: 02-880-5153